

한국전자음악협회 학술지 에밀레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11년 3월 1일)

제 1장 목적 Goal

본 규정은 한국전자음악협회의 연례학술대회의 과정을 포함하는 한국전자음악협회의 학술지 에밀레의 논문게재와 이에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연구자 Researchers

제 1절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정의

제 1조 위조와 변조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자료 혹은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에 어긋나도록 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연구자의 실수로 생긴 오류 역시 위조나 변조로 간주될 수 있다.

제 2조 왜곡

1. 왜곡이란 학문의 발전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연구자료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행위를 일컬으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제 3조 표절

1.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다른 연구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가 없이 그대로 사용(번역)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다른 연구 결과 가운데 핵심 개념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지 않고 본인의 연구 개념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출간하는 것 역시 표절이며 따라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언어로 된 개념을 번역하였어도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표절이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에서 발췌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에 의하지 않고 발췌하여 사용(번역)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4.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이 연구물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인용하여야 하며, 이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연구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도, 제 1장 제 3조의 1~4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조 이중게재

1. 이중게재란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에 의하지 않고 여러 번 출간하는 것을 일컬으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며,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에 적용된다.
2. 동일한 연구결과를 번역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처음 논문이 출간된 학술지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최초게재지를 명시하고 번역물임을 밝혀야 하며, 이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논문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역시 인용과 최초출간물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4.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교양잡지와 같이 일반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록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기존에 발표한 연구물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보완하여,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정보 등이 추가되는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동일한 연구결과를 번역하여 기존의 연구물이 출간되었을 때와는 다른 언어권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할 때, 원래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7. 동일한 연구결과가 같은 언어권의 전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출간되는 경우, 연구물이 최초로 출간된 학술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출간될 때에는 최초출간지를 밝혀 재출간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는 해당 논문에 대해 아무런 출판상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물이 연구업적으로 인정여부는 각 기관의 내규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제 5조 명예저자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계획이나 수행, 개념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자신을 포함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제 2절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정

1.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정은 해당 논문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긴다.
2. 심의위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 3의 내부 전문인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 때에도 판정이 힘든 경우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인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판정한다.

제 3절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부정행위 혹은 연구부적절행위의 혐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위반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반혐의를 받은 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 혹은 연구부적절행위가 개입된 연구물-이하 부적절한 연구물로 칭함-로 판정된 논문은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에 게재될 수 없다.
5. 출간 후에 부적절한 연구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판정 즉시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논문목록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검색과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인쇄되어 배포된 책자의 경우, 각 도서관을 통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를 지우도록 요청한다.
6.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이후 3년간 한국전자음악협회에서 어떠한 학술활동과 예술활동도 할 수 없다.

제 4절 논문의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과정과 한국전자음악협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심의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상세히 알린다.

제 3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 1절 편집위원의 의무

제 1조 논문게재

편집위원회는 한국전자음악협회의 연례학술대회에 투고된 연구계획안의 평가에서부터 <컴퓨터 음악 저널 - 에밀레>의 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며, 연구자와 심의자의 인격 및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 2조 논문취급

편집위원회는 한국전자음악협회의 연례학술대회에 응모된 연구계획안의 평가에서부터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의 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계획안과 논문들을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취급하여야 하며, 사적인 친분에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연구계획안과 논문의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이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3조 심의의뢰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계획안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의위원을 최소한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의뢰 시에는 연구계획안과 평가지를 지급하며, 평가지의 1번 문항인 주제에 대한 평가자의 친밀도를 기준으로 심의위원의 평가를 어느 정도로 수용할 지를 판단한다. 평가자의 주제에 대한 친밀도가 낮으면, 평가위원회는 해당 평가자를 연구계획안 심의위원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심의위원을 최소 2인 이상 찾을 때까지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의 심의위원의뢰절차를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
2.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 3의 내부전문인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때에도 판정이 힘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자체회의를 결성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인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판정한다.

제 4조 비밀유지

1.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 심의위원의 명단과 개별평가내용을 익명으로 공개한다.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계획안응모에서 선발되지 않은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한다. 해당 년도의 전체 응모자 수는 밝힐 수 있다. 연구계획안이 통과되어 연례학술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응모자들의 명단은 학술대회이전 논문제출이 끝나고 연례학술대회에 즈음하여 학술대회프로그램과 함께 공개한다.

제 2절 편집위원의 자격박탈

3년 간 편집위원으로서의 의무(최소 의무: 회의 참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편집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제 4장 심의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 1절 심의위원의 의무

제 1조 논문평가

1. 심의위원은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안 및 논문을 심의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정된 평가지에 작성하여서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구계획안 평가지의 제 1문항인 심의위원의 주제에 대한 친밀도는 심의위원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연구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심의자가 해당 연구계획안의 내용 평가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편집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심의위원이 연구계획안의 평가단계에서도 스스로가 평가자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주제에 대한 친밀도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의 게재를 위한 제 3의 심의위원을 선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제 3장 제 1절 제 3조 제 2항 참조]

3. 심의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지에는 연구계획안 혹은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데,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중한 문체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2조 비밀유지

1. 심의위원은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안 및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신이 심의를 맡은 연구계획안 및 논문을 심의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
3. 평가지 작성 시에 자신의 판단을 위해 다른 사람(타심의위원)과 의논할 수 없다.
4. 연구계획안의 최종심의를 끝나더라도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 2절 심의위원의 자격박탈

1.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잘못 이행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심의윤리위반혐의를 받은 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 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심의윤리위반자로 판정된 자의 평가는 해당년도 연구계획안 평가와 <컴퓨터 음악저널 - 에밀레>게재여부평가에서 즉시 그 효력을 잃으며, 해당 연구물은 제 2~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5. 출간 후에 심의윤리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물은 제 2~4장의 규정에 의해 다시 평가되어야 하며, 이에 의해 자격미달연구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는 판정 즉시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논문목록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검색과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인쇄되어 배포된 책자의 경우, 각 도서관을 통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를 지우도록 요청한다.
6. 심의윤리위반으로 판정된 심의자는 이후 3년간 한국전자음악협회에서 어떠한 학술활동과 예술활동도 할 수 없다.

제 5장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역할 Definition and range of copyright

제 1절 교신저자

제 1조 정의

교신저자란 학술지 투고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일컫는다.

제 2조 역할

1.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의 순서를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사실을 알려 확인 받아야 한다.
3. 교신저자는 논문심사 후에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

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절 저자

제 1조 저자의 결정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연구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발표 시에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저자의 순서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기여도에 의한다. 양적기여도와 질적기여도 등 기여도 결정에 대한 협의는 저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절 공동저자

제 1조 정의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기여한 자를 일컫는다.

제 2조 범위

공동저자의 포함범위는 연구계획이나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에 한한다.

제 3조 역할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해당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조 명예저자

제 2장 제 1절 제 5조 참조.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인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